
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기간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,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
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(등외 판정),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).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
2).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.

3).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
2. 계약목적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

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
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.

3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, 계약당사자(센터주체, 서비스이용자, 서비스 보호자), 인적사항, 계약기간, 계약의 변경, 계약의 해지,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, 배상책임, 이용규정, 개인정보보호의무,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, 1부는 장기요양기관(센터)이 보관한다.

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수급자 본인이 치매,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
4.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구 분		금 액(원)
월 한도액	1등급	2,512,900
	2등급	2,083,400
	3등급	1,485,700
	4등급	1,370,600
	5등급	1,177,000
	인지지원등급	657,400

구 분		(방문당) 금 액(원)
방문요양	30분 이상	17,450
	60분 이상	25,320
	90분 이상	34,120
	120분 이상	43,430
	150분 이상	50,640
	180분 이상	57,020
	210분 이상	63,530
	240분 이상	70,080

구 분		(방문당) 금 액(원)
방문목욕	목욕차량(차량)이용	88,990원
	목욕차량(가정)이용	80,230원
	목욕차량 미이용	50,100원

①이용료 등 수납 -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.

②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-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.

③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금액으로 산정한다.

5.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인수 권리 및 의무: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,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.

①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1).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2).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

- 3).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4).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- 5).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
1. 수급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
2.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
3.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5.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

6.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③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‘갑’, ‘을’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
-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성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⑥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,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
-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7.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

- ①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 1.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③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영업 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며, 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1.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
 2.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

- 3.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- 4.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- 5.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, 입원, 사망한 경우
-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.
- ⑥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